

# 비정년트랙교원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지침

**KAU** 한국항공대학교

## 개정 기록표

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	번호	개정일자	개정자 (서명)
1	2017.11.2		16		
2	2021.4.26		17		
3	2024.11.4		18		
4			19		
5			20		
6			21		
7			22		
8			23		
9			24		
10			25		
11			26		
12			27		
13			28		
14			29		
15			30		

## 비정년트랙교원 책임강의시간에 관한 지침

**제1조 (목적)** 본 내규는 본 대학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이 의무적으로 담당해야 하는 기본강의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책임강의시간)**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학기별 책임시간은 <표1>과 같다. 단,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중 보직을 수행하는 교원의 책임시간은 <표2>와 같이 적용한다. <개정 2024.11.4.>

<표 1>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<개정 2017.11.2., 2024.11.4.>

구분	임용시기별	책임시간(주당)
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	-	연간 12시간
교육중점교수	-	연간 18시간
교육중점교수 (어학담당 외국인어학교원)	2017년 3월 이전 임용	연간 30시간
	2017년 3월 임용 부터 적용	연간 24시간
연구중점교수	2017년 3월 임용부터 적용	연간 6시간

<표2> 보직 수행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의 책임시간<신설 2024.11.4.>

구분	보직종류	책임시간
채용형산학협력중점교수	부산단장	연간 4시간
	부학부장, 학과장, 부속기관장, 센터장 및 부센터장	연간 6시간
	학부 전공주임교수, 융합전공 주임교수, 한국어교육원 주임교수	연간 8시간
교육중점교수 (어학담당 외국인 어학교원 제외)	부산단장	연간 10시간
	부학부장, 학과장, 부속기관장, 센터장 및 부센터장	연간 12시간
	학부 전공주임교수, 융합전공 주임교수, 한국어교육원 주임교수	연간 14시간

**제3조** (책임시간의 변경) ① 제 2조의 책임시간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.

② 강의로 지급 규정 <별표2>에서 정의한 연구 또는 교육 우수 교원의 경우에는 책임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 <신설 2021.4.26>

**제4조** (초과강의료) 학기별 강의담당시간이 책임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강의료를 지급하며 초과강의료의 지급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24.11.4>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17년 11월 2일부터 시행하되, 2017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.
2.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1년 4월 26일부터 시행하되, 2021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.
3. (시행일) 이 개정 지침은 2024년 11월 4일부터 시행하되,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.